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7.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2022년 9월 18일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22.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명칭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기존 2명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며,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의3)
- 환경공무원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기존 2명에서 모든 자녀로 변경 (안 제8조)

- 다른 조례에서 사용 중인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 (안 부칙 제2조)
-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종란)

○ 본 조례안은

- 청소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명칭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여대상 자녀를 기존 2명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며,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명 및 제1조, 제2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에서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명칭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2조의3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환경미화원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기존 2명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였고,
-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모든 자녀로 확대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 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
----------	----

발의년월일: 2022년 9월

발의자: 전승관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직명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사회인식변화를 도모하고,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체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및 제2호 및 제3조의2제1항 및 제5조 및 제6조제2호 및 제8조2항 및 제11조제1항)

나.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의3)

다. 환경공무원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2명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변경 (안 제8조제2항)

라. 다른 조례에서 사용 중인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 (안 부칙 제2조)

마.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금법」에 관련 용어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9. 14. ~ 9. 19.):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환경미화원 자녀들”을 “환경공무원 자녀들”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으로, “운용·관리에 관하여”를 “운용·관리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을 “환경공무원자녀 학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본문 중 “변경하고자하는”을 “변경하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주요항목 지출금액”으로 한다.

제2조의3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위촉 하는”을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남은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5제1항 중 “인정할때”를 “인정할 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처리하게 하기”를 “처리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 출납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재학중”을 “재학 중”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하며, “동일자녀”를 “동일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졸업후”를 “졸업 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여회수 제한)”을 “(대여횟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여회수”를 “대여횟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국고대여장학금”을 “대여학자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2명 이내”를 “모든 자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임금지급시”를 “임금 지급 시”로, “원천공제 한다”를 “원천공제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졸업후 2년거치**”를 “**졸업 후 2년 거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3년내**”를 “**3년 내**”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단서규정**”을 “**단서**”로, “**월에 미상환잔액**”을 “**달에 미상환 잔액**”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상환금전액을 일시상환**”을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휴학후 2년이내**”를 “**휴학 후 2년 이내**”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군입대자**”를 “**군 입대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환경공무원 퇴직금**”으로, “**10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환경미화원 1명**”을 “**환경공무원 1명**”으로, “**5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u> <u>설치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소속 <u>환경미화원</u> <u>자녀들</u>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환</u> <u>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u>을 설치하고, 그 <u>운용·관리에 관</u> <u>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구성) ①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u>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u> (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 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생 략)</p> <p>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환경미</u> <u>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p> <p>② (생 략)</p> <p>제2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① · ②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원</u> <u>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u></p> <p>제1조(목적) ----- ----- <u>환경공무원 자</u> <u>녀들</u>----- ----- <u>환</u> <u>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u> -----<u>운용·관리에</u>----- ----- -----.</p> <p>제2조(기금구성) ①----- ----- <u>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u>-----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환경공</u> <u>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p>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학자금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③ (생략)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 변경하고자 하는 -----

-- . --- 주요항목 지출금액---

--.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
----- 2027년 12월 31일
----- . -----

----- .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 목적 외-----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2. (생략)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는 사람

④ (생략)

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개최한다.

② (생략)

②-----

----- 1
이상 -----.

③-----

-----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3. 관련 분야-----

----- 위촉하는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 중 -----

----- 남은 기간-----
-----.

제3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 인정할 때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생략)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4. 5. (생략)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제4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①-----

----- 처리하기 -----

-----.

② (현행과 같음)

③-----기금출납원-----

-----.

제5조(대여대상) -----

환경공무원-----

----- 그 밖에 -----

----- 재학 중-----

-----.

제6조(대여제한대상) -----

-----.

1. (현행과 같음)

2. ----- 환경공무원-----

----- 동일 자녀-----

3. 졸업 후 -----

4. 5. (현행과 같음)

제7조(대여횟수 제한) -----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생략)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 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

대여회수-----
-----.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 공무원연금공단-----
----- 대여학자금-----
-----.

② 환경공무원 -----
----- 모든 자녀-----

-----.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임금 지급
시 -----
----- 원천공제한다.

③----- 졸업 후
2년 거치 -----
----- 3년 내-----
----- 않을 -----
-----.

④----- 단서-----

----- 달에 미상환 잔액-----

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
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생략)

제11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
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
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
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이상
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
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

-----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 상환 -----.

1. 2. (현행과 같음)

3. ----- 휴학 후 2년
이내-----.
--- 군 입대자-----

4. (현행과 같음)

제11조(채권보전) ①-----
----- 환경
공무원 퇴직금-----
----- 10년
이상----- 환경공무
관 1명 ----- 5년 이상-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 시행에-

-----.